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審 査 報 告 書

2005. 9. 14.  
제243회 임시회

## 1. 심사 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5년 8월 29일

○ 회부일자 : 2005년 8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5. 9. 7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

가. 제안 이유

- 행정자치부의 「지방소방관서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소방공무원 직급조정 지침」에 의한 소방력 보강과
- 진천소방서 및 봉양·청산파출소 신설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 나. 주요 내용

- 정원의 총수 : 2,545명 ⇒ 2,595명 (증50명)
  - 집행기관의 정원 : 변동없음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변동없음
  - 소방공무원의 정원 : 997명 ⇒ 1,047명 (증50명)
  - 교육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 직급별 증감내역 : 소방직 50명
  - 소방정 증1, 소방령 증11, 소방경 증22, 소방위 감1, 소방장 감2, 소방교 증8, 소방사 증11
- 다른 조례의 개정(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진천소방서 신설에 따른 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

## 3. 검토보고 요지

### (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 7. 27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소방공무원 직급조정 및 소방관서·구조구급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 배치하려는 것임.
  - 근거 : 행정자치부 『지방소방관서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소방공무원 직급조정 지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현재 997명에서 50명을 증원한 1,047명으로 조정되고 직급별로는 소방정 1명, 소방령 11명, 소방경 22명, 소방교 8명, 소방사 11명 등 53명이 증원되면서 소방위 1명, 소방장 2명 등 3명은 감원하게 됨.

- 또한 신설되는 소방관서는 진천소방서와 제천소방서 봉양파출소, 영동소방서 청산파출소 등 3개관서이며,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청주 동부소방서와 서부소방서, 그리고 제천소방서에 “구조구급과”가 설치됨.
  - 진천소방서 : 증 23명(소방정1, 소방령2, 소방경6, 소방위2, 소방장3, 소방교4, 소방사5)
  - 진천소방서 중앙파출소(중전 “진천파출소”) : 25명(21명 + 증4명)
  - 제천소방서 봉양파출소 : 13명(7명 + 증6명)
  - 영동소방서 청산파출소 : 17명(10명 + 증7명)
  - 청주동부소방서 구조구급과 : 6명(3명 + 증3명)
  - 청주서부소방서 구조구급과 : 6명(3명 + 증3명)
  - 제천소방서 구조구급과 : 6명(4명 + 증2명)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소방관서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 직급조정을 통해 소방력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무엇보다 이러한 정원조정의 배경에는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으로 인한 직원 사기저하와 인력부족에 따른 유사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 실제로 도내 998명의 소방공무원중 74.5%인 744명이 24시간 격일 교대근무를 하는데다 비번시에는 보충·비상근무 등도 감수해야하는 열악한 근무여건은 그 단적인 예가 되고 있음.
- 따라서 다양한 소방행정수요에 걸맞는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대응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한 본연의 임무인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의 업무를 보다 충실하기 위해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조치로 여겨짐.

- 다만, 보다 효율적인 안전 심사를 위해 현소방인력 배치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과 최근의 연도별 사안별 출동 및 주요 조치상황, 그리고 적정규모의 소방인력운용에 관한 방안제시가 필요함.
- 아울러 인력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이 연간 약 26억원 정도인데 이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단계적 소방인력보강 운용계획 등에 대해서도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545명”을 “2,595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997명”을 “1,047명”으로 한다.

별표중 정원의 총수 2,545명을 2,595명(증원 50명)으로 하고, 직속 기관의 정원 1,240명을 1,290명(증원 50명)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중 충청북도증평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 다음에 충청북도진천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충청북도증평소방서	증평군 관내	증평군, 괴산군 일원
충청북도진천소방서	진천군 관내	진천군 일원

##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관련)

직종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총 정 원		2,595	947	65	1,290	293
정무직(도지사)		1	1			
일반직	소 계	1,043	779	40	63	161
	2~3급	1		1		
	3 급	7	5		1	1
	4 급	55	36	7	4	8
	5 급	204	161	7	14	22
	6 급	349	264	13	18	54
	7 급	373	275	12	22	64
	8 급	53	37		4	12
	9 급	1	1			
일 반 별 · 정	소 계	4	3	1		
	5 급	2	1	1		
	6 급	1	1			
	7 급	1	1			
별정직	소 계	17	10	1	5	1
	1 급	1	1			
	5 급	2	2			
	6 급	9	3		5	1
	7 급	3	2	1		
	8 급	1	1			
	9 급	1	1			
연구직	소 계	138	1		109	28
	연구관	21			18	3
	연구사	117	1		91	25
지도직	소 계	24			24	
	지도관	6			6	
	지도사	18			18	
소방직	소 계	1,047	59		988	
	소방정	10	2		8	
	소방령	29	10		19	
	소방경	58	4		54	
	소방위	67	6		61	
	소방장	142	11		131	
	소방교	324	24		300	
	소방사	417	2		415	
교원	소 계	44			44	
	학 장	1			1	
	교수 부교수 조교 초·중·고교 선임교사	32			32	
	조 교	11			11	
기능직	소 계	277	94	23	57	103
	6 급	8	5	1	1	1
	7 급	29	10	3	4	12
	8 급	58	18	1	6	33
	9 급	88	26	8	27	27
	10 급	94	35	10	19	30

# 신·구조문대비표

##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 (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b>2,545명</b>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b>997명</b></p> <p>3.~ 4. (생략)</p>	<p>제2조 (정원의 총수) .....                  ..... <b>2,595명</b>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b>1,047명</b></p> <p>3.~ 4. (현행과 같음)</p>

##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현행			개정안		
[별표2]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별표2]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	위치	관할구역	명칭	위치	관할구역
충청북도청주동부소방서	청주시 관내	청주시 상당구, 청원군중내수읍, 북이면, 남일면, 가덕면, 문의면, 남성면, 미원면, 오창면 일원, 보은군 일원	(현행과 같음)		
충청북도청주서부소방서	청주시 관내	청주시 흥덕구, 청원군중옥산면, 강내면, 강외면, 남이면, 부용면, 현도면 일원	(현행과 같음)		
충청북도충주소방서	충주시 관내	충주시 일원	(현행과 같음)		
충청북도제천소방서	제천시 관내	제천시, 단양군 일원	(현행과 같음)		
충청북도영동소방서	영동군 관내	영동군, 옥천군 일원	(현행과 같음)		
충청북도증평소방서	증평군 관내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일원	충청북도증평소방서	증평군 관내	증평군, 괴산군 일원
<신설>			충청북도진천소방서	진천군 관내	진천군 일원
충청북도음성소방서	음성군 관내	음성군 일원	(현행과 같음)		

## 관계 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실·국·본부등 기구의 설치) ①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 및 사무분장을 함에 있어서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⑤ (생략)

# 비용소요 추계서

##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구 신설
  - 소방관서 : 진천소방서, 봉양파출소, 청산파출소
  - 구조구급과 : 청주동부·서부소방서, 제천소방서
- 정원의 총수 : 2,545명 ⇒ 2,595명(증50명)
  - 소방공무원 : 997명 ⇒ 1,047명(증50명)

##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2,656,084	
○ 인건비	2,047,527	
- 기본급	964,740	*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 적용 - 소방정( 1명) : 20호봉 기준 - 소방령(11명) : 18호봉 기준 - 소방경(22명) : 18호봉 기준 - 소방위(△1명) : 17호봉 기준 - 소방장(△2명) : 15호봉 기준 - 소방교( 8명) : 12호봉 기준 - 소방사(11명) : 10호봉 기준
- 수 당	539,055	
- 정액급식비	78,000	
- 교통보조비	77,160	
- 명절휴가비	120,591	
- 가계지원비	200,986	
- 연가보상비	66,995	
- 기타직보수		
- 일용인부임		
○ 물건비	259,30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40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8,000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00	
- 직책급업무추진비	13,200	
- 직급보조비	97,44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2,760	
○ 이전경비	349,257	
- 성과상여금	32,155	
- 연금부담금	230,467	
- 국민건강보험금	43,303	
- 연금지급금	43,332	